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중레저활동 안전 관련
사무의 소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416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	3
2.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등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9
3. 일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동 소관으로 개정	16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2일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다만,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Ⅲ. 검토의견

1.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 ----- ----- ----- ----- ----. <u>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⑤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u> ----- ----- -----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의 수중·수상에서의 레저활동에 관한 법률체계와 업무 소관을 보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해수면·내수면의 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말하며,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편, ‘수상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래프팅, 수상스키, 조정,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중 체험활동(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안전점검이나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있음.

[표] 수중·수상 레저활동 관련 현행법률 체계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수중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
법률소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조문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활성화사업, 자발적 협약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수중레저활동자의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안전점검 -사업자의 조치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제4장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등록의 결격사유 -지위의 승계 -휴업·폐업 등의 신고 -이용요금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영업의 제한 -자료제출 -등록취소 -과징금	◦제1장 총칙 ◦제2장 조종면허 ◦제3장 안전준수의무 -안전장비의 적용 -운항규칙 등의 준수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사고의 신고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주취 중 조종 금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제4장 안전관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시정명령 -일시정지·확인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운영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결격사유 -권리·의무의 승계 -휴업등의 신고 -이용요금 -안전점검 -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준수사항 -영업의 제한 -자료 제출 -사업 등록취소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6장 보험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비고	※안전관리 외 수중레저산업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규정 포함	※산업활성화정책 관련 규정 없음

□ 그런데, 수중레저활동 및 수상레저활동 모두 해수면·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에도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수중레저활동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 인력 부재로¹⁾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 업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안전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법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활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분산·중복 규정하고 있는 등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1) 해양수산부 직원 1명이 수중레저사업 등록만을 담당하고, 현장 안전 관리 인력은 없는 상황임.

[표]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 비교

	수중레저법	연안사고 예방법
적용대상	▶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는 수중 활동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	▶ 수중 체험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등)
안전점검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행 ▶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 수중레저기구, 장비, 시설물	▶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연안체험 활동지 안전점검
사업 등록/ 신고	① 기구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② 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③ 수중레저활동 교육사업	▶ 사업자 등록 없음 ▶ 운영자(체험활동 모집, 프로그램 운영)

□ 이에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중 안전 관련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중·수상에서의 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여짐.

- 개정안에 따른 실제 계획 수립 절차를 보면,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활성화 분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행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등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협조요청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게 됨.
-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활성화 사업은 현행법 제5조에 비추어 볼 때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등이 그 대상이 됨.

- 한편, 현행법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기본계획의 수립현황을 보면, 현재 23년 4월 계획기간을 23년부터 27년(5년간)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개정안 부칙 제2조 규정²⁾에 따라 안전관리 분야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이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제3차 계획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중레저활동 안전분야에 한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제2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2.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등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규정 작성,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제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u>해양경찰청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점검)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 ① <u>해양경찰청장</u> ----- ----- ----- -----.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② <u>해양경찰청장</u> ----- ----- ----- -----.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 정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 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생략)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 어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수 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려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u>해양수산부 장관</u>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	----- ----- -----. ③ ----- <u>해양경찰청장</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 ----- - <u>해양경찰청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 ----- ----- ----- ----- <u>해양경찰청장</u>- -----. ② ----- ----- <u>해양경찰청 장</u>----- ----- -----. 제19조(이용요금) ----- -----
---	---

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25조(과징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

----- 해양경찰청장-----

-----.

-----.

제23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

-----.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

-----.
-----.

1. ~ 6. (현행과 같음)

제25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

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제27조(청문)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경찰청장</u>----- ----- ----- ----- -----. 제26조(수수료) ----- ----- ----- ----- <u>해양경찰청장</u> -----. 제27조(청문) <u>해양경찰청장</u>----- ----- -----.
---	---

나. 검토의견

-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해수면·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제도·관리가 분산·중복 규정되어 있는 등 수중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중레저활동 사고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로, 최근 3년간('22~'24년) 수중레저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중·경상, 사망 등)는 총 26명으로 이 중 22명 사망한 반면,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는 총 74명 중 12명 사망으로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표] 수중·수상 레저 인명사고 현황³⁾



특히, 최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증가, 수중레저선호 경향에 따라 연관사업체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관련 활동이 증가⁴⁾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①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규정 작성, 수중레저사업장 안전 점검 등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②수중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하여 해수면·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 ①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안체험활동⁵⁾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안전

3) 해양경찰청 제출 자료

4)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 현황이 15년 146개소에서 19년 612개소, 21년 801개소로 증가함.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

관리 분야는 해양수산부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을 보다 갖춘 점, ②수중 레저활동과 수상레저활동의 성격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 관련 사무 및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하는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규정

구분	안전관리 사무 이관	등록·관리 사무 이관
개정안	제7조 안전관리규정 작성 · 시행	제15조 수중레저사업장의 등록 제18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19조 이용요금 제23조 자료제출
	제10조: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제24조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제25조 과징금 제26조 수수료 제27조 청문

-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조정 내용을 보면 ①안전관리 규정의 경우 현재 안전관리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은 수중레저장비의 안전 관리, 장비대여 관련 사항, 수중레저시설물 상태의 확인, 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보다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등록 사무의 이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중레저사업의 유형은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으로 구분되고, 사업자로 등록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
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따라서, 교육과정에서의 안전관련 사항의 준수 및 이에 따른 업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표] 수중레저사업 업종별 현황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
사업내용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 레저기구 또는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 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등록기준 (제15조 제1항)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및 장비에 관한 수리기술 보유 등	수중레저기구 보유 및 그 조종자격 취득이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 고용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 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 고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록현황	477개소	267개소	880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안전 및 질서확보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과 그 성격이 유사한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본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일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동 소관으로 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중 현지성이 높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시·군·구와 해양경찰청 공동 소관으로 개정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생략)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u>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u>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u>을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영업의 제한) <u>해양수산부장관</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8조(권한의 위임) <u>해양수산부장관</u>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u>수중레저활동</u>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제22조(영업의 제한) <u>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권한의 위임) <u>해양경찰청장</u>----- ----- ----- ----- -----. 제3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라 <u>해양수산부장관</u> 이 부과·징수한다.	<u>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중 ①수중레저활동 제한, ②금지구역 지정, ③영업 제한, ④과태료 부과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구분	내용	비고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제13조)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내수면·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제14조)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1개소(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끝단으로 부터 반경3마일 해역)
영업의 제한(제22조)	기상 악화 등의 경우 수중레저사업자에 대한 영업 제한 또는 영업 일시정지	
과태료 부과(제32조)	수중레저활동 신고, 제한, 금지 규정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유사 입법례로 「수상레저안전법」의 경우에도 ①수중레저활동 제한, ②금지구역 지정, ③영업 제한, ④과태료 부과 등 조문에 대한 권한은 해양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표] 유사 입법례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영업의 제한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 1.~6. (생략)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0.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한편, 안 제28조는 권한의 위임 규정 관련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되더라도 수중레저활동 활성화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장과 병기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상레저안전법」과 비교할 때에 수상레저활동에 관한 금지공고, 영업제한 사유 소멸 시의 해제, 과태료 부과징수·주체의 구분 등이 차이가 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만큼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이후 그 반영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현지성이 높은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에 대하여 지역이해도가 높은 시·군·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